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9.

발 의 자 : 송언석 · 김위상 · 박수민  
이인선 · 서명옥 · 유상범  
구자근 · 이종욱 · 최수진  
조경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그런데 6·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거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6·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,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).



#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6·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6·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신문, 잡지, 방송, 그 밖에 출판물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
2.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·게시 또는 상영
3.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, 간담회, 기자회견, 집회,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

제4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37조의2를 위반하여 6·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. 다만, 예술·학문, 연구·학설,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<p>3. (생 략) ② (생 략)</p>	<p><u>· 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. 다만, 예술·학문, 연구·학설,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